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제17조제1항제1호의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<u>100%이하로</u> 한다. 2. 3. (생략)	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제17조제1항제1호의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<u>90%이상으로</u> 한다. 2. 3. (현행과 같음)
제51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“<u>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</u>”(Cp클래스, Cp-E클래스, S-P클래스의 경우에는 “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”)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	제51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“<u>수익증권저축약관</u>”(Cp클래스, Cp-E클래스, S-P클래스의 경우에는 “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”)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
<신설>	부칙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